

## 약관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보호예수 약관』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(구)외환은행 약관을 통합내규 반영하여 일부 개정

(구)하나은행 약관을 (구)외환은행 변경약관 반영하여 구행명 삭제후 통합약관으로 개정

개정 전(구.하나은행)	개정 후	비 고
<b>제1조 보관대상</b> (생략) ~  <b>제8조 준용</b> (생략)	<b>제1조 보관대상</b> (좌동) ~  <b>제8조 준용</b> (좌동)	(구.하나은행 약관 준용)
개정 전(구.외환은행)	개정 후	비 고
<b>제1조 (보관대상) ~ 제5조 (이표·배당권 등의 인도청구) (생략)</b>  <b>제6조 (보호예수 수수료) (2011.2.1 삭제)</b>   <b>제7조 (매매·양도 등의 금지)</b> 상속·유증·판결·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보호예수증서를 매매·양도·질권설정할 수 없다.  <b>제8조 (면책)</b>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호예수 물품의 멸실·훼손·기타의 손해 또는 자연 변질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 <b>제9조 (준용)</b>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을 준용한다.	<b>제1조 (보관대상) ~ 제5조 (이표·배당권 등의 인도청구) (좌동)</b>  <b>제6조 매매·양도 등의 금지</b> <u>상속·유증·판결·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보호예수증서를 매매·양도·질권설정할 수 없다.</u>  <b>제7조 면책</b> <u>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호예수 물품의 멸실·훼손·기타의 손해 또는 자연 변질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u>  <b>제8조 준용</b> <u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한다.</u>  <b>제9조 (준용) &lt;삭제&gt;</b>	(구.하나은행 약관 준용_ 통합내규와 일치)  (상등)  (구.하나은행 약관 준용_ 구행명 삭제)